

수학능력 부족 외국인 유학생 수강신청 학점 제한 제도 시행(안)

I. 현황

1. “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및 육성방안”(입학관리팀-716,2015.10.29.)에 따라 수학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학점을 12학점으로 제한하는 정책 확정
2. 학칙 제36조(학사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)제5항에 주요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

II. 시행 방안

1. 대상자 : 2016학년도 이후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
2. 수학능력 부족 기준 : 2학년 진입 이후(3학기 이후) 해당 학기 학업성적(평점평균)이 2.00(수강신청 학점 기준, F 포함)미만
3. 수강신청 학점 제한 대상 : 위 1,2에 모두 해당하는 자
4. 수강신청 학점 제한 : 차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2학점으로 제한
5. 시행일 : 2016.9.1.
6. 최초 적용학기 :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에 의해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
7. 적용례
 - 1) 수강신청학점 제한 받은 학기의 학업성적이 2.00이상이면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해제하여 차 학기 수강신청학점은 당초 학칙에 정한 수강신청학점을 부여
 - 2) 수학능력 부족의 기준이 되는 학업성적은 당해 학기 1개 학기만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학기 전체의 성적을 누적하여 반영하지 않음

- 3) 학기는 정규학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절수업 학업성적은 제외
- 4) 학업성적이 향상되어 수강신청학점 제한에서 해제된 학기의 학업성적이 다시 2.00미만이 되면 차 학기에 다시 수강신청학점을 제한 함. 수강신청학점 제한 횟수에 제한 없음
- 5) 수강신청학점 제한 된 학기에 사용하지 못한 수강신청 학점은 유보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.
8. 전산시스템 개발 : 성적시스템, 수업시스템과 연동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보 관리시스템에 반영
9. 지침반영 : 외국인 유학생 관리·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 예정

【신·구 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 (안)
<p><조 신설></p>	<p>제16조(수학능력 부족자 수강신청학점 제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학능력부족자란 2학년 진입 이후(3학기 이후)의 학기별 학업성적이 2.00미만(수강신청학점 기준, F포함 이하 같다)인 경우를 말한다. ○ 학업성적에 계절수업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○ 2016학년도이후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2학년 진입 이후 수학능력부족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 학기부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12학점으로 제한한다. ○ 수강신청학점 제한 된 학기의 학업성적이 2.00이상일 경우에는 수강신청학점 제한을 해제하며 차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은 당초 학칙에 정한 학점을 부여 한다. ○ 수강신청학점 제한 된 학기에 사용하지 못한 수강신청 학점은 유보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. ○ 수강신청학점 제한 학기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